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우선 지원대상 선정
요건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추가〉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42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우선 지원대상 선정 요건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추가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20.

3. 회부연월일 : 2026. 3.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및 시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비 가리개 등 공동이용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는 등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우선 지원대상 선정 요건에 지방
자치단체 재정여건 추가 (안 제20조제1항)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적인 고려 요건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가리개 및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안전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u>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u>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 ----- ----- ----- ----- -----. ----- ----- ----- ----- ----- <u>안전점검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의</u>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재정여건 등을-----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의 상업시설·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 등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이 중 주차장·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신청 동의 비율,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시장 시설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시장등의 고객 유치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 동 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를 살펴보면, 비 가리개·진입도로·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시장등의 시설현대화사업²⁾은 2020년 국가사무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해 신규 지원 사업부터 사업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전액 지방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차환경개선사업³⁾ 및 안전관리패키지사업⁴⁾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 2)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세부내용은 상이함.
인천광역시의 경우, 시설현대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음.(인천광역시,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226호, 2025. 4.30.)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다음의 사업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 진입도로(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안전시설(무등록시장 포함, 수익자부담으로 점포내부까지 일괄공사 가능),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 안전문제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 3)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 및 증축, 개량시 국비 보조
 -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서 공공시설 및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
- 4) 안전관리패키지사업 지원내용
- (개별점포) 개별점포의 화재 및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전기, 소방, 가스, 기타분야 시설물 개선·설치
 - (공용구간) 노후·알림·가스·기타부문 개별점포에 사업 추진 후 잔여예산에 한해 화재·재해 예방에 필요한 설비 등을 정비

사업별 사업비 분담비율

사업명	분담비율	비고
시장등의 시설현대화사업	(인천광역시) •시비 75%, 군구비 15%, 민간 10% -민간 10% 부담에 대해, 재정여건에 따라 군구 5% 이내 부담가능 (강원특별자치도) •도 60%, 시군 30%, 민간 자부담 10% -민간 10% 중 시군 재정여건 및 지역사정에 따라 시장·군수 조정 가능	지자체별 상이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립, 개·보수) 국비 60%, 지방비 40% •(이용보조)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자부담 10%	
안전관리패키지사업	•국비 70%(350만원 이내), 지방비·자부담 30%(150만원 이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및 인천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 시설현대화사업 공고문 재정리

이와 같이 국비와 지방비 또는 시·도비와 시·군·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사업 추진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함.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매칭 예산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 시장등의 시설 노후화 심화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지역 간 시설 수준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주차장·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업의 우선 지원 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적인 고려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정 여력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한 시장등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시설 수준의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상 우선 지원 기준의 명시만으로는 재정 취약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⁵⁾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우선 지원 기준의 명시에 더하여, 동 시행령상의 지원조건 차등화 규정을 활용하여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우대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